

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6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6. . 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 이유

- 시·도에 설치하는 실·국 상한수를 규정한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우리 도에도 1개 국 증설이 가능하고, 정원도 승인되어 업무량이 꾸준히 늘어나는 문화관광분야의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문화관광국을 설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
□ 주요 골자

- 문화관광국을 신설하여 다음 분장사무를 명시
 - 문화예술의 육성
 - 문화재보존관리
 - 체육진흥 및 청소년관련업무
 -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조정
 - 관광지도 및 관광지 개발업무
- 문화관광국 신설에 따라 현재의 내무국 및 공업경제국 분장사무 중 중복이 되는 다음 업무를 삭제
 - 내무국 - 문화예술의 육성, 문화재 보존관리 및 체육진흥 청소년 관련 업무
 - 공업경제국 - 관광의 진흥

□ 근거 법령

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7조제1항

□ 따로 붙임

1.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 1부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
3. 참고 자료(근거 법령 내용) 1부 끝.

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중 "공업경제국" 다음에 "문화관광국"을 신설한다.

제6조중 제10호 "문화예술 육성, 문화재 보존관리 및 체육진흥, 청소년 관련 업무"를 삭제하고, 같은 조 "제11호"를 "제10호"로 한다.

제10조중제4호 "관광의 진흥"을 삭제한다.

"제11조 내지 제14조"를 "제12조 내지 제15조"로 하고,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문화관광국) 문화관광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.

1. 문화예술의 육성
2. 문화재보존관리
3. 체육진흥 및 청소년관련업무
4.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조정
5. 관광지도 및 관광지개발업무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